

# 펀드투자권유 전문인력 투자자보호

# Lesson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1.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2. 투자권유규제
3.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5.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학습이정표

## • • 학습목표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투자권유규제의 주요내용(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 및 투자권유대행인제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 학습내용 • •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투자권유규제
-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1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1. 발행절차 등

#### 1) 투자신탁 수익증권

가)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집합투자업자가 발행

□ 수익증권은 집합투자업자가 발행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해야 함

- 수익증권 발행가액의 납입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해야 하나, 사모투자신탁으로서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증권, 부동산 또는 실물자산으로의 납입이 가능(현물납입).

- 수익증권은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

□ 수익증권의 발행가액은 기준가격(투자신탁재산순자산가치/총발행수익증권수)에 기초하여 정해짐

나)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일괄예탁발행

□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실물증권 발행에 따르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예탁결제원을 명의로 하여 일괄예탁방법으로 발행

- 투자는 수익증권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투자신탁 설정시부터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를 통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실물 수익증권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투자증개업자를 통해 반환받을 수 있음

- 이러한 일괄예탁발행에 따라 수익자명부에는 예탁결제원이 수익자로 등재

#### 2) 투자회사 주권

□ 투자회사 주권은 당해 투자회사가 발행하며,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당해 투자회사의 이사회가 결정

-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회사 주식도 무액면·기명식으로 발행되며, 기준가격에 기초하여 발행가액이 정해짐

□ 투자회사는 수종의 주식(우선주·후배주·혼합주), 상환주식,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없고 오로지 보통주만을 발행해야 함

- 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일괄예탁방식으로 발행되는 점도 투자신탁 수익증권과 동일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1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2.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

-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규정(제3편 제1장)을 적용함
  - 종전 자산운용법하에서는 간접투자증권을 공모발행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법상 공모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있었지만,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에 대해서도 일반사업법인의 증권발행과 동일하게 공모규제를 적용받도록 하고 대신 펀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특례를 두고 있음
- 집합투자증권의 공모발행에 증권신고서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①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 수리되기 전에는 집합투자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수 없으며, ②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는 법령에서 정한 투자설명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으며, ③ 집합투자증권을 공모발행한 후에는 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1) 증권신고서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자는 당해 증권의 발행인이다. 법인형 집합투자기구(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는 당해 집합투자기구가, 비법인형 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는 당해 집합투자업자가 발행인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에 대해서도 당해 투자신탁 및 투자익명조합을 발행인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개방형, 폐쇄형 모두 원칙적으로 15일
  - (정정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원칙적으로 3일
- (개방형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 특례) ① 일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② 일괄신고서 제출 후 실제 집합투자증권 발행시 추가서류 제출의무 면제, ③ 정정신고서 제출특례 등이 인정
- 따라서, 증권신고서제도의 적용을 받더라도 발행예정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행 가능

#### 2) 투자설명서

##### 가) 투자설명서의 의의

- 증권을 공모함에 있어 청약의 권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설명서에 의하여야 함
  - 투자설명서의 내용은 증권신고서 기재내용과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신탁업자는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증권신고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1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 나) 투자설명서의 종류 및 사용제한

- ([정식]투자설명서) (정식)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후에만 사용 가능
- (예비투자설명서) 예비투자설명서는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덧붙여 적은 투자설명서로서, 증권신고서 수리 후 효력발생 전에 사용 가능
- (간이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사항만 발췌하여 기재한 투자설명서(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 홍보전단 등)로서, 증권신고서 수리 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비투자설명서와 같지만 효력발생 전은 물론이고 효력발생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다) 투자설명서의 교부

- (원칙)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식)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 (예외) 다만, ① 전문투자자, ② 모집매출 기준인 50인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3 및 ③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자, ④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하려는 자(해당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설명서의 내용이 직전에 교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같은 경우만 해당)에 대해서는 교부하지 않아도 됨

### 라) 투자설명서의 갱신

- 개방형펀드는 최초 공모 시에만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는 별도의 증권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고도 집합투자증권을 계속 발행 가능
  - 대신 투자설명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 즉, 최초투자설명서 제출 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투자설명서를 갱신해야 하고, 집합투자기구 등록사항을 변경등록 한 경우 변경등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반영하여 투자설명서를 갱신해야 함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2

## 투자권유규제

### 1. 집합투자증권의 투자권유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투자권유에 대해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설명의무와 적합성원칙 및 적정성원칙)하고 있음

#### 1) 적합성(Suitability)의 원칙 도입

-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투자목적, 재산상태, 투자경험 등을 면담 등을 통해 파악하여 서면으로 확인받도록 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 도입하고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의 특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 'Know-Your-Customer-Rule'과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에게만 적용

#### 2) 적정성(Appropriateness)의 원칙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 의무화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파생상품 등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려는 때에는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 해당 파생상품 등이 그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일반투자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함(법 제46조의2)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2

## 투자권유규제

<적정성의 원칙 적용대상 금융투자상품(영 제52조의2제1항)>

1. 파생결합증권. 다만, 금적립계좌 등은 제외
2.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장외파생상품이나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당해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서 정한 운용방침이나 투자전략이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당해 집합투자기구가 연동하고자 하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가 시행령 제246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1좌당 또는 1주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과 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변동률의 차이가 100분의 10 이내로 한정되는 집합투자기구에 한함)의 집합투자증권을 말함(금투업규정 제4-7조의2)
3.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파생결합증권에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4. 법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라 해당 사채의 발행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미리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그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된다는 조건이 붙은 사채(“조건부자본증권”)
5. 파생상품이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융투자상품에 운용하는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탁의 수익권이 표시된 것을 포함)

### 3) 설명의무의 도입

- 가) 투자자에 대한 실질적 설명의무(투자자 이해 확인)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상품 내용과 위험 등을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함(법 제47조제1항)
- 형식적 설명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명 내용을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도록 하고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2

## 투자권유규제

- 투자자를 오도(misleading)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중요사항의 설명에 허위나 누락이 없도록 할 것을 의무화함

\* 자본시장법 이전 법령에서는 선물·자산운용·부동산투자회사에만 설명의무가 존재하였으나 투자자문·투자일임·선박투자회사에는 투자설명서 교부의무만 존재하고 증권사, 신탁회사, 창투사 등에는 설명의무가 없었음

### 나) 설명의무의 일반투자자에 대한 적용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지식과 분석능력이 없는 일반투자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전문투자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고 소유자산 규모 등에 비추어 투자위험을 감수할 능력이 있는 투자를 의미

○ 전문투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금융투자업자는 이에 동의해야 함) 일반투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일반투자를 전문투자자로 대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다) 설명의 미이행 등에 대한 금융투자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설명의무 미이행, 중요 사항 설명의 허위·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누락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금융투자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

○ 이 경우 투자자의 원본 결손액\*을 금융투자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으로 추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구제를 두텁게 함

\* 투자가 금융상품 투자로 지급한 또는 지급할 금전의 총액에서 투자가 금융상품으로부터 취득한 또는 취득할 금전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

- 손해액의 추정 규정으로 인해 손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증책임이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되는 효과

### 4) 부당권유의 금지

○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부당한 권유를 하여서는 안됨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2

## 투자권유규제

1. 거짓의 내용을 알리는 행위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3. 투자자로부터 투자권유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을 이용하는 행위(불초청권유). 다만, 투자자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증권과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투자권유행위는 이러한 제한 적용배제
4.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거부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제한 적용배제
  - ㄱ. 투자성 있는 보험계약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ㄴ. 투자권유를 받은 투자자가 이를 거부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후 1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ㄷ. 다른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5. 투자자(전문투자자 및 신용공여를 받아 투자를 한 경험이 있는 일반투자자 제외)로부터 금전 대여나 그 증개·주선·대리를 요청받지 아니하고 이를 조건으로 투자권유를 하는 행위

### 5) 투자권유준칙

#### 가)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 제정 및 공시의무

- (투자권유준칙 제정·공시의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 그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를 정해야 하며,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해야 함

#### 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등급별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 제정의무

- 금융투자업자는 파생상품 등에 대하여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등급별로 차등화된 투자권유준칙을 마련해야 함

#### 다) 금융투자협회의 표준투자권유준칙 제정

-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제정할 수 있음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2

## 투자권유규제

### 2. 투자권유대행인

#### 1) 종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문제점

-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해야 하므로 투자의 불편 초래
- 2)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경로 다양화 :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 도입
-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보다 다양한 경로로 접근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대행인제도를 도입
- 투자권유대행인은 금융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사실상 중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로 정의

#### 3) 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 가) 집합투자증권 투자권유대행인

- 투자권유자문인력 · 투자운용인력(법 제286조제1항, 협회 시행 능력검증시험 합격자 등), 보험 모집에 종사중인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보험업법시행령 별표3)로서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는 교육이수\*

\* 집합투자증권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행 30시간 교육(이수시험 포함) 요구

##### 나) 기타 증권 투자권유대행인

- 해당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에 합격한 자(법 제286조제1항 제3호가목·다목)로서 협회가 정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는 교육이수
-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자나 금융투자업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수취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투자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위탁받는 행위도 금지

#### 4)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한 규제

##### 가)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부과

- 투자권유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손해배상책임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투자권유 규제'를 모두 적용하여 불완전 판매를 예방
- 투자권유 시 자기 명의·계산에 의한 판매를 금지하고 투자권유대행인임을 고지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2

### 투자권유규제

- 투자권유대행인은 업무를 위탁한 금융투자회사가 관리하도록 하고 불완전 판매로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게도 손해배상책임 부과
- 나)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대행 위탁 불허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투자권유의 범위에서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제외함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3

##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 자본시장법은 투자권유와 투자광고를 구분하기 위해 투자권유를 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을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함으로써 불특정 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것은 투자광고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 특색임
- 자본시장법은 투자광고에 대해서는 투자광고의 주체 및 투자광고 내용을 제한하고 있음
  - 투자광고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정한 내용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고 특정한 사항은 포함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제하고 있음
- 1) 집합투자증권 광고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전체에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두는 한편, 집합투자증권에만 적용되는 광고규제를 별도로 두고 있음(법 제57조제3항)
  - 금융투자상품 전체에 적용되는 광고관련 규제로는 광고주체 제한 및 광고 시 준수사항이 있고, 집합투자증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는 광고 시 포함내용에 관한 규제가 있음

**<집합투자증권 광고 시 의무기재사항 및 임의기재사항>**

1.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사항(법 제57조제3항각호)

① 집합투자증권 취득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볼 것을 권고하는 내용

② 투자원금손실가능성 및 손실의 투자자 귀속사실

③ 과거운용실적이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

2. 광고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영 제60조제2항 및 금투업규정 제4-11조제2항)

① 집합투자업자 등에 관한 사항

② 지급보수 등에 관한 사항

③ 해당펀드의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④ 과거운용실적

⑤ 환매사항

⑥ 법 제47조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

⑦ 집합투자재산은 신탁업자에 따라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

⑧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 및 회계감사인이 집합투자재산을 적법하게 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사실

⑨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에 적합한 투자자에 관한 사항

⑩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구조

⑪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등이 평가한 평가결과

⑫ 일반적인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⑬ 투자금의 한도 및 적립방법

⑭ 비교광고를 하는 경우 비교의 대상이 되는 다른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운용기간, 운용실적, 그 밖에 비교의 기준일자 등에 관한 사항

⑮ 투자광고의 특성상 필요한 표제·부제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3

##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광고 시 준수사항(영 제60조제3항 및 금투업규정 제4-12조제1항)〉

- ①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하는 경우 좋은 기간의 것만을 표시하지 말 것
- ② 비교광고 시 명확한 근거 없이 다른 펀드를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표시하지 말 것
- ③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을 것
- ④ 투자광고계획서와 투자광고안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것
- ⑤ 광고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수립·운영할 것
- ⑥ 투자광고문에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또는 준법감시인 심사필을 표시할 것
- ⑦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실태평가결과와 영업용순자본비율 등을 다른 금융투자업자의 그것과 비교하는 방법 등으로 광고하지 아니 할 것

### 2)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사모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음

#### 가) 판매보수

##### ① 판매보수의 개념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

##### ② 판매보수의 한도

- (판매보수 한도 : 원칙)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영 제77조제4항제2호)

\* 연평균가액은 집합투자재산의 매일의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일수로 나눈 금액

- (판매보수 한도 : 예외)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2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영 제77조제4항제2호단서 및 금투업규정 제4-48조제1항)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3

### 집합투자증권의 광고, 판매보수 및 수수료

#### 나) 판매수수료

- ① 판매수수료의 개념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
  - 판매수수료는 판매시점에 취득하는 선취판매수수료와 환매시점에 취득하는 후취판매수수료 두 종류가 있음
- ② 판매수수료 차등화
  - 판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방법, 판매금액,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투자기간 등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받을 수 있음
- ③ 판매수수료의 한도
  -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영 제77조 제4항제1호)
    - \* 납입금액은 집합투자증권의 매수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
    - \*\* 환매금액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 또는 출자지분의 수를 곱한 금액(관련세금은 고려하지 않음)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1. 집합투자증권 환매제도

- 환매제도란 집합투자증권(개방형펀드)을 매입한 투자자가 펀드의 순자산가치대로 자신의 투자지분(집합투자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제도
  - 환매제도를 통해 투자자는 환매시점의 펀드 운용실적대로 투자자금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음
  - 폐쇄형펀드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이 시장에 상장되므로 투자자는 시장에서의 집합투자증권 거래를 통해 투자자금을 회수

### 2. 환매방법

- 투자자는 자신에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 가능
  - 환매청구를 받은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 투자익명조합) 또는 투자회사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해야 함
- 1) 환매대금 지급방법
  - 환매청구를 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 중인 금전 또는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금전으로만 환매대금을 지급해야 함
  - 예외적으로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당해 집합투자기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 가능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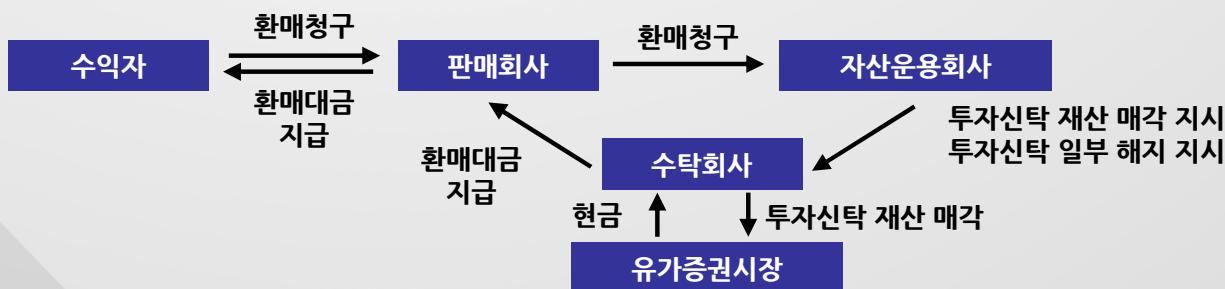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절차 : 환매제도 비교표

	법령내용
환매청구권자	투자자
환매청구의 상대방	판매회사, 다만 판매회사(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증개업자)가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업자도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자산보관·관리회사)
환매절차	② 환매절차 개요도 참조
환매시 기준가격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으로서 환매일 이내에서 집합투자규약(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계약 또는 투자회사의 정관)이 정한 날의 기준가격
환매수수료	1. 부담주체 :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부과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하는 당해 투자자 2. 귀속 : 집합투자재산에 귀속
환매의 연기	1. 주체 :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등) 2. 환매연기사유 : 시행령 각호의 사유 3. 환매연기 및 재개의 절차 :
일부환매(부분환매)	1. 결정주체 : 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 등) 2. 사유 :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 3. 일부(부분)환매절차 : ①정상자산 및 환매연기자산의 구분 ②정상자산에 상당하는 좌수 환매, 환매연기자산에 대해서는 환매연기와 동일

### ② 환매절차 개요도

#### 가) 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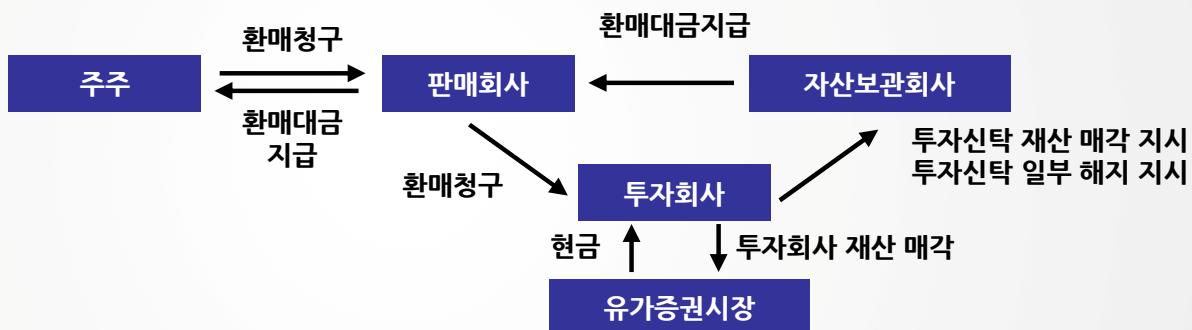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나) 투자회사



### 2) 자기계산에 의한 환매 제한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증권을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취득하게 해서는 안됨

### 3) 자기계산에 의한 환매 제한의 예외

- ① MMF를 판매한 투자매매·중개업자가 MMF 판매규모의 5% 상당금액과 100억 원 중 큰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투자자로부터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MMF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
- ② 투자자가 금액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증권(MMF 제외)의 환매를 청구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가격으로 그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환매일에 그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매수하는 경우

### 4) 환매대금 지급기간

- 환매청구 후 실제 환매금을 지급하는 때까지의 기간, 즉 환매기간은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규약(신탁계약서, 투자회사정관 등)에서 정할 수 있음
  - 다만, ①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 ②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환매기간을 15일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음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3. 환매연기

#### 1) 환매연기의 의의

- 환매연기란 순자산가치 산정 곤란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정기간 환매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  
환매연기 기간 중에는 환매연기대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 행위도 금지

#### 2) 환매연기사유

- 환매연기는 자본시장법령에서 정하는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 실행할 수 있음

- |  |
|--|
|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투자매매 또는 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3) 환매연기절차 등

- |  |
|--|
| ①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에 환매연기를 결정  |
| ②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 환매연기를 결정한 날부터 6주 이내에<br>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br>- 집합투자자총회에서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br>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연기 가능 |
| ③ 집합투자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지체 없이 서면 또는<br>컴퓨터통신(예탁결제원에 위탁 가능)으로 투자자에게 통지   |
| ④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된 때에는 환매가 연기된 투자자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br>환매금을 지급  |

### 4) 부분환매연기와 펀드분리

#### 가) 부분환매연기

- 부분환매연기란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집합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하는 것을 말함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나) 펀드분리

- 펀드분리란 펀드 내 자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환매연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환매연기대상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환매연기대상 자산을 현물로 납입하여 별도의 펀드를 설립하는 것을 말함
  -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펀드지분 보유자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도 펀드를 분리할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음
- 펀드분리는 우선 환매연기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고, 분리된 환매연기자산을 현물로 납입하여 별개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
- 환매연기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펀드를 설정 또는 설립하면 집합투자자는 분리 전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
- 펀드가 분리되면 정상자산만으로 구성되는 펀드(정상펀드)에서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를 재개할 수 있으며, 환매연기자산만으로 구성된 펀드(부실풀드)의 경우는 계속 환매가 연기된다.
  - 부실풀드에 대해서는 동일종목 투자제한규정 등 자본시장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이 면제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4. 환매가격

#### 1) 환매가격

- 환매가격은 환매청구일 이후에 산출한 기준가격(구체적으로는 환매청구일부터 기산하여 제2영업일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해야 함
  - 판매가격의 경우 자금납입 후 최초로 산출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도록 하는 반면에, 환매가격의 경우 환매청구일 이후에 최초로 산출된 기준가격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MMF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한다는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정하는 것이 인정됨
  - \* ① 투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MMF를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② 투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MMF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기로 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미리 약정한 경우
  - ③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연기금풀(MMF)에 판매한 MMF를 환매하는 경우

#### 2) 환매수수료

-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당해 투자가 부담
  -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 가능. 징수한 환매수수료는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귀속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수수료는 법 제236조 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매하는 경우에 부과
  - 이 경우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 등을 기준으로 부과 가능
- 환매수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환매금액 및 이익금
  - ❶ 환매금액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함)
  - ❷ 이익금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시 적용하는 기준가격과 집합투자증권의 매입 시 적용된 기준가격의 차에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를 곱한 금액(이 경우 환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수에 대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된 이익분배금은 합산하며, 관련 세금은 감안하지 아니함)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5. 집합투자증권의 거래가격

#### 1) 기준가격의 미래가격(forward pricing) 적용 원칙

- 투자가가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하여 금전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 : T+1일 공고된 기준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판매가격 산정 시 미래가격(forward pricing)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음(법 제76조제1항)

\* 금전 등을 납입한 후 최초로 산정되는 기준가격이란 기준가격의 공고·개시일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그 공고·개시일 전일의 집합투자증권 총수로 나누어 산정한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을 말함

- 실무계에서는 이렇게 산정된 기준가격은 익일 영업시간 전에 매일 공고·개시되며 이 기준가격을 흔히 'T+1일 공고된 기준가격'이라 함

#### 2) 미래가격 제도 적용의 예외

-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미래가격) 관련하여서는 몇 가지 예외가 있음(법 제76조제1항단서 및 영 제77조제1항. 제2항)

##### ① 장마감 후 거래(Late-Trading)

- 이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매수청구일 구분 기준시점을 지나서 금전 등을 납입한 경우로서 시장거래의 결과를 확인한 후 부당한 이득을 편취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행위를 일컫는데
  - 기본시장법령에서는 동 거래에 따른 기준가격 적용시점 등에 대하여 제한(장마감 후 거래에 대하여는 금전 등의 납입일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T+2일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하고 있음

##### ② 투자자와 사전 약정에 따른 MMF 매입, 외국환 평형기금 및 연기금투자풀(MMF)에 대한 MMF 판매

- 미래가격 적용의 또 다른 예외는 투자자와 사전 약정에 따른 MMF 매입, 외국환 평형기금 및 연기금투자풀(MMF)에게 MMF를 판매하는 경우인바,
  - 이 경우는 입법 정책적 목적으로 금전 등의 납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과거가격 : T일 공고된 기준가격)을 적용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4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③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금전 등의 납입일로부터 기산하여 제3영업일 또는 그 이후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④ 펀드 판매사를 변경할 목적으로 집합투자증권 환매 후 다른 판매사를 통해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 집합투자증권 환매 후 15일 이내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판매사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1.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1) 운용대상 자산

- 기본시장법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펀드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면 모두 투자 가능

- MMF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운용대상자산등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함

#### 2)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 가)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 ① 자산운용 지시 : 당해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 ② 자산보관·관리 지시 :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

##### 나) 투자신탁

- ① 자산운용 지시 :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운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운용지시
- ② 운용지시에 따른 거래집행 : 신탁업자가 운용지시에 따라 거래를 집행

##### 다) 집합투자업자 직접 취득·매각 가능 자산

- 기본시장법은 투자운용의 효율성과 적시성 확보 등을 위해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집합투자업자 직접 취득·매각 가능 자산>

- ① 국내외 상장주식, 주식관련 DR,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의 매매
- ② 국내외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둘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 ③ 장내파생상품의 매매
- ④ 단기대출(법83조제4항)
- ⑤ 대출(법251조제4항)
- ⑥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증개·인수·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 ⑦ 양도성예금증서의 매매
- ⑧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 ⑨ 장외파생상품의 매매(투자위험회피 목적에 한정 등)
- ⑩ RP매매
- ⑪ 기타 금융위가 정하는 것을 신탁계약에 따라 운용하는 경우

라) 투자신탁재산별 사전·공정 자산배분원칙

- 자본시장법은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자산의 취득·매각을 하는 경우에도 동 원칙 적용

마)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명세서 작성의무

- 집합투자업자는 취득·처분 등을 하려는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투자신탁재산별로 주문금액, 가격, 수량 등을 기재한 취득·처분 등의 주문서와 투자신탁재산별 배분내역을 기재한 자산배분명세서(매매주문 또는 배분내역을 정정하는 경우 포함)를 작성해야 함(취득·처분 등의 주문 또는 배분내용을 정정하는 경우 포함)

바)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 확인의무

-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은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과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함

3) 투자신탁재산에서의 거래이행책임

-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 부담

-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이나 투자설명서 등에 위반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 부담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2. 자산운용의 제한

-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음

#### 1) 증권

##### 가) 동일종목 투자제한

-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는 동일종목\* 증권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음
  -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간주 (공모펀드에 한해 적용)
- 동일종목 투자한도 규제는 리스크 분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거의 없거나 적은 증권에 대해서는 투자한도를 달리 정하고 있음

① 투자한도 100% : 국채·통안증권·정부 원리금보증채권 등과 같이 위험이 거의 없는 증권
② 투자한도 30% : 지방채·특수채증권·파생결합증권·OECD회원국 정부 발행채권
③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가능 :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지분증권
* 시가총액비중은 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월간 적용함

##### 나)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 각각의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 초과 투자 제한
  - 집합투자업자가 다수의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 중인 모든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20% 초과 투자 제한
  - 이는 i) 펀드자산으로 특정회사 지분증권을 과다 취득 할 경우 당해 회사를 지배할 수 있게 되는 문제, ii) 특정회사 지분증권 집중투자에 따른 리스크 증가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투자제한 또한 공모펀드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2) 파생상품

#### 가)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제한

- 일정한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 금지

#### 나)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순자산총액)의 100% 초과 투자 제한

#### 다) 동일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액 제한

-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초과 투자 제한

#### 라)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 제한

-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초과 투자 제한

### 3) 부동산

- 집합투자기구에서 국내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는 처분 금지

- 집합투자기구에서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함

### 4) 집합투자증권

#### 가) 동일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기구 투자제한

- 동일한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들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0% 초과 금지

#### 나) 동일집합투자기구 투자제한

- 동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초과 금지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다) 재집합투자기구(Fund of Funds)에 대한 투자금지

-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 : Fund of Funds)에 대한 투자 금지

#### 라) 동일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 20% 초과 투자 금지

- 동일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20% 초과 투자금지

#### 마) 집합투자증권 판매보수 및 판매수수료 합계 한도 제한

-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펀드가 투자하는 다른 펀드(외국펀드를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투자 매매업자 포함) 또는 투자증개업자(외국투자증개업자 포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판매수수료는 납부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판매보수는 펀드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사모부동산펀드는 제한을 받지 않음].

#### 바) 동일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기구 투자제한(50%)와 동일집합투자기구 투자제한(20%) 적용 예외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자본시장법 제81조 제1항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을 적용할 때 예외적인 경우에는 각 집합투자기구(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하되, 나목은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는 증권집합투자기구도 포함한다)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 또는 100분의 30까지 투자 가능

#### 5) 환매조건부매도 및 증권대여·증권차입 제한

##### 가) 환매조건부매도 제한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총액의 50% 초과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금지

##### 나) 증권대여 및 증권차입 제한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50% 초과 증권 대여 금지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0% 초과하여 증권 차입 금지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6) 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 가) 금전차입 제한

- ① 원칙 :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금전 차입 금지
- ② 예외 : 일시적 자금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 인정

\* 1.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지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집합투자자총회 안건에 반대하는 투자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 ③ 차입상대방 : 금융기관
- ④ 차입금총액 : 차입 당시 집합투자재산총액의 10% 초과 금지
- ⑤ 차입금 전액 변제 전 투자대상자산 추가 매수 금지

##### 나) 금전대여 제한

- ① 원칙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인 금전의 타인 대여 금지
- ② 예외 : 콜론(금융기관 등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허용

##### 다) 보증 및 담보제공 금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이나 담보제공 금지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3.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제한

####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 가) 원칙 :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금지

###### \* 이해관계인의 범위

- ①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②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그 배우자
- ③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 및 그 배우자
- ④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증개업자
- ⑤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한다)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신탁업자
- ⑥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등

##### 나) 예외 : 집합투자기구와의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거래

- ①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 ② 증권시장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 ③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④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 제외)과의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 ⑤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와의 외국통화의 매매
- ⑥ 이해관계인인 금융기관에의 예치(전체 금융기관 예치금액의 10%까지)
- ⑦ 이해관계인의 증개·주선·대리를 통해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 행하는 투자대상자산의 매매
- ⑧ 이해관계인의 매매증개를 통해 그 이해관계인과의 채무증권, 원화표시 양도성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매매 등
- ⑨ 이해관계인(전담증개업무를 제공하는 관계판매사 및 관계수탁사인 이해관계인인 경우만 해당)과 전담증개업무로서 하는 거래
- ⑩ 환매기간을 30일 이내로 하여 이해관계인(영 제7조제4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환매조건부매매의 수요·공급을 조성하는 자로 한정)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이 환매조건부매매를 증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거래
- ⑪ 그 밖에 거래의 형태, 조건,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염려가 없다고 금융위 확인을 받은 거래

## 집합투자관련 법규 2

5

###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규칙

#### 2)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사 발행증권에 대한 투자제한

##### 가) 집합투자업자 발행 증권 : 취득 금지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및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제외) 취득 금지

##### 나) 집합투자업자의 계열사 발행 증권 : 취득 한도 규제

- ① 지분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계열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① 자신이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중 지분증권에 투자 가능한 금액의 5% 및, ②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25% 초과 금지

- ② 지분증권 외의 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계열사가 발행한 지분증권 외의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계열회사 전체가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출자한 비율 해당금액\* 초과 금지

\* (계열회사 전체가 소유하는 집합투자업자 발행 의결권 있는 주식수·집합투자업자 발행 의결권 있는 주식 발행총수)×집합투자업자 자기자본



## 정리하기

-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는 투자자가 이해하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투자자가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손해 발생 시 금융투자업자에게 손배해상책임을 부과하고 투자자의 원본결손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금융투자업자에게 전가하는 효과를 지닌다.
- 투자권유 전에 투자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고객파악의무(Know-Your-Customer-Rule)와 적합성의 원칙은 위험감수능력이상대적으로 미약한 일반투자자에게만 적용한다.
-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권유 없이 일반투자자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해당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부적정할 경우 경고 등 조치를 의무화하는 적정성의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판매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투자권유대행인(Introducing Broker)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증권 광고 시에만 적용되는 사항 중 의무기재사항과 임의기재 사항으로 구분하고 있다.
- 판매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2, 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1을 한도로 하고 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미래가격(forward pricing)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장마감 후 거래(Late-Trading) 등과 같이 미래가격제도 적용의 예외가 있다.
- 집합투자증권 환매 시는 집합투자재산 보유 현금 또는 집합투자재산 처분으로 조성한 금전으로 환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되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 정리하기

-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과 관련하여 투자신탁재산별 사전·공정 자산배분원칙, 자산배분명세서 작성의무, 주문서와 자산배분명세서의 적정성 및 이행 여부 확인의무, 거래이행책임 등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운용대상자산의 종류(증권, 파생 상품,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에 따른 자산운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증권의 대여·차입, 금전의 대여·차입을 제한하고 있다.

